

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영 광 군 수

2021년 7월 30일

영광군 규칙 제1352호

붙임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「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1인과 부위원장 1인”을 “1명과 부위원장 1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위원회의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에는”을 “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”로 한다.

제4조 단서 중 “당해연도”를 “해당연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10인 이상 15인”을 “10명 이상 15명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, “언론계, 문화예술계, 정·관계, 사회단체,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다.”를 “주민대표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해당 읍면 언론계, 문화예술계, 정·관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의한 자로”를 “따른 사람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자”를 각각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중전의 제2항)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”을

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

②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 중 “조례 제6조”를 “「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」 제6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영 광 군 수

2021년 7월 30일

영광군 규칙 제1353호

붙임 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.

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

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8조, 「지방회계법 시행령」 제48조”를 “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”로, “금고취급금융기관(이하“금고””를 “금고취급금융기관(이하 “금고”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만,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”을 “다만,”으로, “1에 해당하고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, “거친 경우에 한한다”를 “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쟁을 공고하였으나”를 “경쟁입찰을 공고하여도”로, “재공고 입찰을 하여도”를 “재공고 하였음에도”로, “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”를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되, 특별회계와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경쟁방법에 의하여”를 “군수가 경쟁방법으로”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, “의한다.”를 “따른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협력사업 추진 능력”을 “협력사업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수의방법에 의하여”를 “군수가 수의방법으로”로, “경우”를 “경우에”로, “다음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다”로

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금고간”을 “금고 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금고지정시”를 “군수는 금고지정에”로, “효율적으로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금고지정심의위원회”를 “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2호의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한다.

1.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
2.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

3.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

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간사는 금고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,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항”을 “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수의방법으로”를 “수의방법으로 금고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

“과반수 이상”을 “과반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누설해서는아니”를 “누설해서는 아니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예산의 범위안에서수당과 여비를지급”을 “「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, “열람할수”를 “열람할 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금고평가기준”을 “금고지정 평가기준”으로, “객 관적이고”를 “객관적이고”로, “계약 기간”을 “약정기간”으로, “제출하여야한다”를 “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금고약정기간”을 “금고 약정기간”으로, “금고를지정”을 “금고를 지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⑤ 군수는 심의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군보및”을 “군보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금고약정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취급업무
2. 금고관련 각종 법령·조례·규칙의 준수 의무
3.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
4. 일시차입 및 기채
5. 배상 및 변상 책임
6. 비용 부담 및 수수료
7. 계약 해지
8. 계약 조문 해석

9. 유효기간 등

제9조제1항 중 “그밖”을 “그 밖”으로, “할특별한”을 “할 특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금융기관의의견을 청취할수”를 “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보고에는”을 “금고는 제1항의 보고에”로, “이자수입총액”을 “이자수입 총액”으로, “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”를 “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없이 군수에게”를 “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지체 없이”로, “보고하여야”를 “군수에게 보고하여야”로 한다.

① 금고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을 월별로,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,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협력사업비 운용)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라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(이하 “협력사업비”라 한다)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,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,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% 이상 증액되는 경우

2.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평균잔액 대비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

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금고약정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[별표 1]

영광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

항 목	세 부 항 목	배점	비고
계		100	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	소 계	27	
	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① 국외평가기관(4점) ② 국내평가기관(4점)	(8)	
	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 ① 총자본비율(안정성, 6점) ② 고정이하 여신비율(건전성, 6점) ③ 자기자본 이익률(수익성, 5점) ④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유동성, 2점)	(19)	
2.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	소 계	20	
	가. 정기에금 예치금리	(7)	
	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	(6)	
	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	(4)	
	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	(3)	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	소 계	21	
	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 설치 대수	(8)	
	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	(6)	
	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	(7)	
4. 금고업무 관리능력	소 계	25	
	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	(6)	
	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	(8)	
	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	(8)	
	다.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	(3)	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	소 계	7	
	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	(5)	
	나. 군과의 협력사업 계획	(2)	

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(제4조 관련)

I. 일반원칙

1. 세부항목별 배점 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, 필요하면 평가항목을 등급별·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.
2. 세부항목별 배점 하한은 배점 한도의 60% 이상으로 하고,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 한도의 최대 10%에서 최소 4%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한다. 다만, 평가항목 2 (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)와 평가항목 5(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)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/2로 한다.

II. 평가항목별 배점 부여 기준

1.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(27점)

가.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(8점)

- 국외평가기관(4점)
- 국내평가기관(4점)

○ 평가기준 : 공인된 국내·외 신용평가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·평가

○ 평가방법

-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, 서로 다른 신용평가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,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(8점)을

평가

- 다만, 금융기관의 평가등급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균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

나. 주요 경영지표 현황(19점)

-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현황비율을 비교·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※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·확인

-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

- (1) 총자본비율 (안정성, 6점)

※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(안정성, 6점)로 평가

- (2) 고정이하 여신비율 (건전성, 6점)

- (3) 자기자본 이익율 (수익성, 5점)

- (4) 유동성커버리지비율 (유동성, 2점)

※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(신협, 농수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)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(금감원,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)의 기준에 따름

※ 금융감독원,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

2.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(20점)

가. 정기예금 예치금리(7점)

- 금융기관이 제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공금예금 적용금리(6점)

-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 금리를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

에 따라 배점

다. 군에 대한 대출금리(4점)

- 군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(3점)

-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적용기준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3.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(21점)

가. 관내 지점의 수, 관내 무인점포 수, 관내 ATM 설치 대수(8점)

-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 입금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관내 영업점, 무인점포 및 ATM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되 관내 지점의 수에서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함

나.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(6점)

-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(7점)

-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,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(전자납부 등) 증진방안,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4. 금고업무 관리 능력(25점)

가.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(6점)

-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·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(8점)

-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 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, 금고업무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다.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(8점)

-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, 세입·세출 과정상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능력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라.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(3점)

-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OCR센터 운영 경험 및 실적, 운영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5.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(7점)

가.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(5점)

-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, 재해구호 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

나. 영광군과의 협력사업 계획(2점)

- 군에 지원할 협력사업비 출연금과 지원계획 등을 비교·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